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가. 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민, 사업자 및 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보전하고

나. 1992년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실천 강령인 의제21(Agenda21)이 채택되어 전세계적으로 의제21의 실천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지방의제21" 실천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기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

2.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5조

3. 주요골자

가. 환경보호 이념속에 제반시책은 환경보전을 기조로 수립·시행함(안 제2조)

나. 구 및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안 제5조 내지 제8조)

다.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코자 함

(안 제10조)

라.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 지원(안 제18조)

마. 환경시책의 내실화와 홍보를 위해 "환경백서"발간(안 제20조)

바. 환경시책의 수립·집행·감시활동을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함(안 제21조 내지 제30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건은

○ 각종개발로 인한 환경파괴행위와 무분별한 환경 훼손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등 부작용으로 인하여 각종 질병과 재해로 지구촌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어

○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보전의 필요성 제기와 자구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유엔에서도 지난 1992년 환경개발회의를 통하여 **의제21**를 채택, 환경보전 유지관리에 대한 실천의지가 가시화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헌법규정에도 명문화 되어있고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 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확보와 위민봉사행정구현에 크게 기여 한다고 판단되며

○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 등 10개구에서는 기히 조례가 제정되어 활용 중에 있고 강서구를 비롯한 여타 구에서도 입법예고 중에 있음

○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환경기본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

□ 위 조례 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